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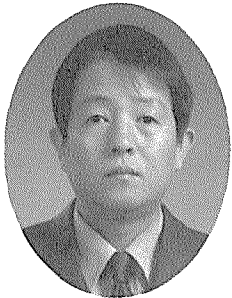
주유소 상표표시제 고시개정 배경 및 내용

1. 서론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 4. 4.(수) 위원회를 개최하여 현행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에 있어서의 공급자에 관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고시」(공정위 고시 제1999-12호, 이하 '주유소 상표표시제'라 함)를 개정하여 금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최종 확정하였다.

현행 고시상으로는 주유소에 특정정유사 상표를 폴사인 등에 표시하는 경우 1개 정유사 상표만을 표시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개정하여 단수 또는 복수플 설치여부는 사업자의 자율에 맡기되,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소비자 오인 우려가 없도록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토록 개정한 것이다.

이하 동 고시 개정의 배경 및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정 정 길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과 서기관〉

2. 현행 고시 내용

현행 주유소 상표표시제는 주유소 등 석유제품 판매장소에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표시한 경우 그 정유사가 공급하는 석유제품만을 판매토록 하는 제도로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특정제품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1992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현행 고시가 제정되기 이전에도 주유소에서는 현재와 같이 특정정유사 상표를 폴사인 등에 표시하여 석유제품을 판매하여 왔으나, 고시 제정 당시 주유소 등에서 표시된 상표와 다른 정유사 제품을 혼합판매하는 행위가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허위·기만적인 표시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서 법률(당시 공정거래법 제23조)에 의해 규제가 가능하였으나 관행으로 굳어 온 부당한 표시행태를 바로 잡도록 사전계도하고 규제되는 부당 표시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특정고시를 제정하게 된 것이다.

한편 동 고시는 1999년 7월 1일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함)의 시행으로 동법에 의한 고시로 이관된 바 있다.

현행 고시상 부당표시로서 금지되고 있는 유형은 다음과 같다.

〈현행 고시상 금지대상 표시·광고행위(고시 제5조)〉

1. 특정 석유정제업자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이와 다른 석유정제업자의 상표를 표시·광고하는 행위
2. 서로 다른 석유정제업자의 제품을 교체 또는 혼합판매하면서 특정석유정제업자의 상표를 표시·광고하는 행위
3. 하나의 영업장소에 서로 다른 석유정제업자의 상표를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4. 석유정제업자가 다른 석유정제업자의 제품을 공급받거나 외국석유제품을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자기제품의 품질수준에 미달되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자기상표를 표시·광고하는 행위
5. 기타 실제 판매하는 석유제품과 다른 상표를 표시·광고하거나 소비자를 기만 또는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최근 3년간 동 고시 위반행위, 즉 자신의 영업장소에 특정 석유정제업자의 상표를 표시한 상태에서 이와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판매한 행위로 우리 위원회로부터 경고이상의 조치를 받은 건수는 총 91건이며, 조치 유형별 실적은 아래와 같다.

〈최근 3년간의 시정조치 실적〉

	1998	1999	2000	계
시정명령	3	66	15	84
경 고	2	4	1	7
계	5	70	16	91

3. 고시개정 추진배경

그간 주유소협회 또는 자영주유소업자가 간헐적으로 제기해 오던 주유소 상표표시제 개선(고시폐지 또는 복수 표시인제 허용)요구가 2000년 하반기 이후 집중적으로 분출되었다.

한국주유소협회가 전국 자영주유소 63.4%의 서명을 받아 건의서를 제출하고, 일부 정유업체도 이에 가세하였으며, 나머지 정유사는 현행제도 유지를 요구하여 왔다.

이에 따라 2000년 8월 3일 공정위 주관으로 간담회(관련기관, 업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 14명 참석)를 개최하는 등 현행 주유소 상표표시제를 둘러싼 각계 의견을 수렴한 바, 동 고시의 모법인 표시·광고법의 체계에 부합되지 않는 일부 조항의 개정 또는 삭제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2001년 3월 23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리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 고시 개정방향을 상정하기도 하였다.

4. 고시 개정 내용

두가지 조항을 개정하였는 바, 첫째는 복수상표표시 금지조항(고시 제5조 제3호)의 개정이다.

동 조항은 당초 석유제품은 그 특성상 유통과정에 있어서 수직계열화(단일 상표표시제)가 필요하고 복수표시 허용 시 품질관리가 어려울 것을 우려하여 복수상표표시 자체를 부당표시·광고행위로 규정한 것이나, 표시·광고법에 의한 소비자 오인성 여부는 표시된 제품과 실제 판매제품과의 일치여부에 의해 사후적·개별적으로 판단할 사안으로서, 복수상표표시 자체를 사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표시·광고법 체계에 맞지 않고 주유소로 하여금 특정정유사 제품만 취급토록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개정하게 된 것이다.

즉 단수 또는 복수표시 설치 여부는 사업자의 자율에 맡기되,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소비자 오인 우려가 없도록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토록 개정하고, 복수표시 주유소에서의 품질관리에 따른 문제점은 석유사업법으로 보완토록 하였다.

< 개 정 내 용 >

(현행) "하나의 영업장소에 서로 다른 석유정제업자의 상표를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 (개정) "하나의 영업장소에서 서로 다른 석유정제업자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각 석유정제업자의 상표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지 아니하는 등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둘째, 석유정제업자간 제품교환 관련 조항(제5조 제4호)을 삭제하였다.

석유정제업자간 제품교환은 물류비 절감효과 등 석유산업정책적 측면에서 필요한 것으로 허용여부는 표시·광고법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므로 동 조항을 삭제하였다.

(현행) "석유정제업자가 다른 석유정제업자의 제품을 공급받거나 외국석유제품을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자기제품의 품질수준에 미달되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자기상표를 표시·광고하는 행위"

→ (개정): 삭제

현행 조항은 석유제품의 품질·규격에 관한 사항으로서 필요시 석유사업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5. 결론

금번 고시개정과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복수플사인제의 시행으로 소비자에게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계열 주유소 확보를 위해 그간 막대한 비용을 투입한 기존 선발 정유사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공정위가 고시를 개정하게 된 것은 사업자의 적정경쟁 확보 및 소비자보호라는 동 고시의 양대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복수플 설치를 의무화 또는 전면적으로 실시토록 한 것은 아니다. 즉 단수 또는 복수 플 설치여부는 사업자의 자율에 맡기되,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소비자 오인 우려가 없도록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토록 한 것이며, 복수플사인이 허용되더라도 주유소의 거래상대방 선택은 당사자간 자율에 맡겨져 있으므로 기존 정유사만 피해를 본다고 예단하기는 어려우며 또한 복수플사인제 허용여부가 특정 정유사의 유·불리를 고려하여 결정될 사항은 아니다.

금년 9월 1일부터 복수의 공급자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고자 하는 업체는 주유소 등에서 판매되는 석유제품에 대한 표시에 있어서 소비자 오인 우려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